

심리상담 관련 법 부재에 따른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 실태 확인을 위한 언론 기사 토픽 모델링 분석

김 은 빈 이 지 현*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생

박사과정생

교수

본 연구는 심리상담 법제화가 진행되면서 법이 부재해서 발생하는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 실태가 언론에 어떤 모습으로 보도되는지 알아보려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하여, 법제화를 시도한 2009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5년 6개월에 걸쳐 총 51개 언론이 보도한 국내 기사를 자료로 수집했다. 이후 선별 과정을 거쳐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행위와 법제화와 관련한 기사 186건을 선정하여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에 기반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8개 토픽이 도출되었다. 토픽 1은 비과학적 개입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심리상담 환경, 토픽 2는 개별 영역에서 나타난 전문 인력 배치 부족과 열악한 처우, 토픽 3은 영터리 돈벌이 상담의 심리상담 현장 침입, 토픽 4는 질 낮은 상담에 노출된 취약한 내담자의 피해, 토픽 5는 비전문적 민간자격증 난립, 토픽 6은 심리상담 관련 정책 미비와 혼란, 토픽 7은 심리상담 현장의 규제 없는 현실을 악용한 성범죄, 토픽 8은 심리상담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전문적·비윤리적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환경적 악영향이 전문가 집단뿐 아니라 대중에게 미치는 실태를 조명하여 법제화의 시급성을 드러낸다.

주요어 : 심리상담 법제화, 상담 윤리, 비전문적 상담, 비윤리적 상담, 토픽 모델링

* 교신저자 : 이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포스코관 553-2호, Tel : 02-3277-2637, E-mail : jihyunlee0501@gmail.com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국내에는 심리상담 관련 모법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심리상담 관련 정책은 자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OECD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24.6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리투아니아의 18.5명보다 1.3배 높은 수치다(OECD, 2024).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5일, '27년까지 100만 명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3). 이후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며, 해당 사업을 2024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2027년까지는 일반 국민을 포함해 50만 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23). 이 정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국가공인자격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교사다. 민간자격은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으로 기간을 한정한 다음, 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로 명시되었다(보건복지부, 2024). 472억 원이 배정된 대규모 심리상담 정책이 진행되자, 다양한 상담 관련 집단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자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이 어디여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상담 관련 국가공인자격증과 현장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학회 민간자격증 사이에서 전문가 교육 및 수련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고, 다양한 심리상담 특수 영역에서 발행된 민간자격증이 현장에 혼재해

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모법의 부재는 심리상담 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심리상담 관련 모법 부재는 심리상담 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내담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왔다. 심리상담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 세월호와 가슴기 살균제 같은 충격적인 사회적 참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와 적응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해결사로 매번 등장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실행되는 심리상담은 법의 규제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리상담은 공공정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도 공적 관리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정책 수행 주체를 모호하게 하고, 불건전한 서비스가 건전한 심리상담 서비스 전달 체계와 경쟁하게 만들어 내담자의 서비스 선택을 난감하게 만든다.

심리상담 전문가 집단은 심리상담을 제대로 법제화해 서비스 공급 체계를 공공영역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김영환, 2022). 이와 관련한 법제화 노력의 역사적 흐름은 김인규(2022a)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법제화 과정을 개별 상담 영역과 전반적 상담 영역으로 나누고, 심리상담 제도의 시작점을 2009년과 2012년에 시도한 학교상담 분야의 법제화 시도로 제시했다. 학교상담의 법제화를 위해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심리상담 관련 상위법인 모법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자동 폐기되었다. 개별 상담 영역의 법제화 노력에서 나타난 결과는 심리상담 전문가 집단 내에서 심리상담 모법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심리상

담을 공인된 자격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문상담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개발되었고, 2013년에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 시 전문가 집단이 연합하여 국가 공인 자격화를 시도했으나 인접 영역 직역의 반대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심리상담 모범 필요성은 심리상담 전문가들로부터 계속 제기되었고, 법제화를 위한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김인규, 2022a). 그 결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들은 궁극적으로 양질의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실제적으로 비의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국한하여 전문적 행위를 수행하는 자격을 법률로 규율해서, 현행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비스 전문성 향상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삼았다(이만우, 허종호, 2024). 각 법안은 일치된 입법목적을 추구하지만, 면허와 자격 기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입법조사처 연구에서는 법안별 쟁점을 심리학계와 상담학계 간 양분된 입장으로 간주했다. 당시 심리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심리학회

는 비의료 심리지원으로서 특정 전공으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다양한 인력을 인정한 후, 향후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성, 심리상담 전문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기준, 지속 가능한 제도 운용이 가능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이만우, 2021; 이만우, 허종호, 2024). 이후 2023년 9월에는 5번째 법안인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으나, 5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2024년 5월 29일에 종료되면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새로운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은 16년간 이어져 온 법제화를 향한 노력이 명맥을 이어 결실에 이르도록 꾸준한 관심과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1. 21대 국회의 심리상담 관련 모법 발의안 및 의결 결과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14984	심리상담사법안	최중윤 의원 등 10인	2022.03.28.	2024.05.29.	임기만료 폐기
2115039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0인	2022.03.31.	2024.05.29.	
2115453	심리사법안	서정숙 의원 등 11인	2022.04.29.	2024.05.29.	
2116456	상담사법안	심상정 의원 등 10인	2022.07.14.	2024.05.29.	
2115040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김민철 의원 등 10인	2023.09.18.	2024.05.29.	

법안이 발의된 시기 전후로 심리상담 관련 법에 관한 다수의 연구 논문이 발행되었다. 연구 대상은 주로 법의 방향성, 해외 법령과의 비교, 법 세부 항목의 형태에 치중되었다. 예를 들어, 법제화의 방향성 제시(김영환, 2022; 성현모, 이상민, 2022b; 이만우, 2021; 이만우, 허중호, 2024; 최정아, 2021), 발의된 법안 비교(김인규, 2022b; 성현모, 이상민, 2022a), 미국, 호주, 일본, 대만 등 해외 법안과의 비교, (김수임 외, 2021; 성현모 외, 2022; 이상민, 2020) 상담의 전문직 충족 여부(서영석, 안하얀, 2022), 자격증의 최소 응시 자격 조건(안성희 외, 2022), 해외의 자격 관리 방안 비교(나고은 외, 2021; 신윤정, 이지연, 2021), 업무독점형 혹은 능력인정형 자격 형태(안성희 외, 2022), 법제화 관련 용어 사용(박철형 외, 2022; 성현모 외, 2022; 성현모 외, 2023) 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심리상담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적 당위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최정아(2018)의 연구에서는 현행 법률에서 ‘상담’이 언급된 법률은 총 462개고, 이 중 ‘상담’이 ‘심리상담’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133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심리상담은 재난, 재해, 위기, 중독, 범죄 등 영역에서 언급되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심리상담은 법률 항목에서 용어만 산재한 채 단편적으로 등장할 뿐, 실제로 법률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규정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정신건강 지표에 적신호가 지속되고 국가에서도 대규모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심리상담 관련 기본법 혹은 모법조차 없는 현실은 입법의 심각한 미비라고 할 수 있다. 박기석과 이윤주(2023)는 심리상담 관련 모법 제정의 필요성을 헌법과 기본권이

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현행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장에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예정한다. 즉, 헌법상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된 자유와 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로 구성된다(표명환, 2011).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대표적인 기본권으로는 생명권, 일조권, 알 권리 등이 있다. 심리상담이 과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심화할 필요가 있으나, 인간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유지할 존엄한 존재라는 중요성이 뒤지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심리상담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심리상담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해한다면, 국가는 심리상담 관련 모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 영역 심리상담 법령을 정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국가는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 사회적 약자와 빈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심리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해야 할 책임도 지게 된다(박기석, 이윤주, 2023). 이처럼 법률에서 실제로 ‘상담’이란 용어를 자주 활용한다는 측면과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고려한다면 심리상담 법제화는 국민 실생활의 현실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심리상담 관련 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을 더하려면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과정에 전문성과 윤리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이는 심리상담을 받고자 의도한 국민이 안전하게 심리상담을 받는 환경을 구축하는 조건

이기도 하다. 법제화 과정에서 전문성과 윤리성 차원은 심리상담 분야가 ‘법률이 필요할 만큼 전문화된 직역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이다. 서영석과 안하얀(2022)은 전문직으로서의 심리상담 직역이 고유한 전문지식과 기술 체계, 전문단체 구성 및 구성원들의 권익 보호, 대중에 대한 봉사 및 윤리강령을 갖추고 있으나, 교육을 인준하는 공식적인 기관이 부재하고 심리상담 수행의 독점권이 보장되는 국가 수준의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즉, 심리상담 직역은 지식, 집단,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하지만, 제도와 법률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법제화가 곧 전문직화를 이루어가는 방편인 셈이다. 여기서 전문화 요건으로 언급된 윤리강령은 주요 학회마다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는 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비전문적·비윤리적 심리상담 행위를 제지하는 최종 방어선이다. 즉, 심리상담 법제화는 심리상담 직역의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개별 학회가 보유한 윤리강령과 함께 안전한 심리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윤리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책무를 지닌 모범이 심리상담 현장에 부재한 환경적 맥락은 상담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장에 마련된 윤리강령 중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규정과 이를 바탕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윤리적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2003년에 윤리강령을, 2004년에는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학회는 2008년에 상담심리사 윤리강령과 연구윤리 규정을 구분해 2009년, 2018년 두 차례 개정했고, 시행세칙은 2017년에 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했다. 2017년도부터 학회는 매년 회원들에게 온라인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하여 윤리적 심리상담 활동을 도모해 왔다(문성원, 2018).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서문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심리적 조력 활동을 통해 개인이 자기를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라고 목적을 제시한다. 윤리강령은 전문성, 성실성, 사회적 책임, 인간 존중, 다양성 존중의 원칙을 제시하고, 상담자가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데 있어 ‘내담자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점을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상담자는 다음 8가지 윤리강령을 따른다. 1조 전문가로서의 태도, 2조 사회적 책임, 3조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4조 상담관계, 5조 정보의 보호 및 관리, 6조 심리평가, 7조 수련 감독 및 상담자 교육, 8조 윤리 문제 해결이다(서은경 외, 2023). 학회의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삼아 심리상담 현장 실태를 살펴보면 비전문적·비윤리적 행위를 여러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상담행위,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행하는 상담행위, 자격증 자체를 취득하지 않고 상담자 집단의 관리 감독을 벗어난 상담행위, 비전문가 혹은 전과자의 심리상담 센터 개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담행위, 부정확한 심리학 정보에 관한 콘텐츠 제작 및 유포, 심리상담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 시간, 관계 등 설정, 심리상담 과정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 다양성이 훼손되는 차별 및 2차 가해 등이 있다. 그러나 열거된 비윤리적 위반 행위는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강력히 규제하기 어렵다. 규제가 없는 상태는 심리상담 환경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제화를 통해 전문성을 보장하고 비전문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내담자 복지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상담자 윤리에 따라, 내담자가 저질의 서비스를 경험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한다.

이처럼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는 법제화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법률적,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 정부와 대중에게 모법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노력은 전문가 집단이 전문성의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합의해 나가도록 영향을 발휘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소요했던 시간만큼 법이 부재한 기간도 길어지면서 일부 내담자는 규제되지 못한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에 지속해서 노출되었다. 그렇다면 전문가 집단에서 법제화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기간 동안, 내담자 입장에서 그들이 경험해 온 비전문적·비윤리적 심리상담 현장의 실태는 어떠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심리상담 민간 시장의 행태를 분석하고, 내담자가 실제로 어떤 심리상담 서비스 환경을 경험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그간 ‘전문가 집단이 누구여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는 다양했지만, ‘법이 전문가 집단을 보장하지 않아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여겨질 만큼 중요한 권리를 누려야 할 국민의 현실은 어떠했는가’라는 고민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했다. 내담자가 경험하는 ‘비전문적·비윤리적 심리상담 행태’를 들여다 보려면 법의 방향성과 형태를 주로 다루는 기존 연구에서 관점을 전환하고, 상담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같은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법의 필요성을 보충하는 경험적 근거로써 대외적으로 입법기관이나 행정부처에서 실행하는 정책 마련에 있어 법제화가 속도를 내야 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

한 내담자가 겪는 현실에 관한 반성적 성찰은 전문가로서 품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윤리의식을 고양시켜, 법제화에 참여하는 집단 내 합의를 촉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Schön (1983)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행동을 자체 검열하고, 엄격한 도덕적 잣대에 의거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저버리고, 특별한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식되면서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위기를 맞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내담자 입장에서 현실을 되짚어 보는 작업은 심리상담 모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모법을 속히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는데 당위적 배경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상담 관련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장기간 계류되었다가 폐기된 상황을 배경으로, 대중의 시선에서 ‘규제되지 않는 심리상담이 어떻게 비전문적·비윤리적 행태로 나타났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행위는 ‘사회 전반에 심리상담 영역이 어떻게 비취졌는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 밖에 있는 대중이 대체로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는 수단으로서 언론 보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했다. 즉, 심리상담 관련 모법이 부재한 기간에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행위가 어떠한 모습으로 언론에 포착되어 대중에게 소개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언론 보도 분석은 사회 맥락 안에서 관련자들의 주관적 입장과 객관적 정보나 지식을 담고 있고, 사회적 이슈, 논의의 전개, 사회적 담론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김나영, 홍미영, 2020; 유주영, 2022). 구체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법제화 과정 동안 언론에 보도된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행위에 대한 기사를 수집하여 토

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했다. 토픽 모델링 분석은 언론이 구성하는 담론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특정 쟁점에 대한 담론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쟁점의 특징이나 변화를 예상하는데 자주 사용한다(임연수, 2023). 분석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상담자의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행위로 왜곡된 심리상담 서비스 현장과 심리상담 법제화 과정이 사회적 이슈와 담론으로 제시된 모습을 확인하고자 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법의 부재로 규제 없는 현장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여, 심리상담 관련 모법 제정의 긴급성에 관한 현실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 매체에 보도된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행위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언론 매체에 심리상담 법제화 과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방 법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심리상담의 전문성, 윤리성, 법제화와 관련된 국내 언론 보도기사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BIG KIND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했다. 자료 수집 기간은 선행연구에 따라,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시기를 전반적 상담 영역에서의 법제화 필요성을 부각시킨 개별 상담 영역의 학교상담 법 제정 요구 시기로 간주하여(김인규, 2022a), 2009년 1월 1일부터 분석 시점인 2024년 6월 30일까지 15년 6개월에 걸쳐 보도된 국내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 대상 언론 매체는 총 51개로 표 2와 같다.

기사는 ‘심리상담’과 ‘자격’, ‘전문’, ‘법’, ‘범죄’를 AND로, ‘심리상담사’와 ‘상담심리사’를 OR로 연결하여 검색했다. ‘상담’과 같이 타 분야에서도 자주 응용하는 키워드를 단독으로 검색하면 심리상담 분야와 관련 없는 정보가 대량 추출되기 때문에 ‘심리상담’ 키워드를 기준으로 삼되, 연구 문제와 관련 있는 유의미한 키워드를 결합하여 검색을 세분화했다.

표 2. 분석 대상 자료의 언론사 출처

연번	언론사(갯수)	언론사명
1	전국일간지(12)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2	경제일간지(13)	대한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메트로경제,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3	방송사(5)	KBS, MBC, OBS, SBS, YTN
4	전문지(10)	기자협회보, 디지털타임스, 미디어오늘, 소년한국일보, 시사IN, 일요신문, 전자신문, 주간한국, 한겨레21, 환경일보
5	인터넷신문(11)	EBN, PD-저널, 노컷뉴스, 뉴스쟁권, 뉴스핌, 데일리안, 브레이크뉴스, 비즈워치, 쿠키뉴스, 프레시안, 헬로디디

수집된 기사는 기사 날짜, 언론사, 제목, 키워드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선정

최초 검색된 기사 수는 총 16,732건이었다. 검색 키워드에 따른 기사 수는 표 3과 같다. 1차 선별에서는 기고 날짜/언론사/기사 제목을 기준으로 중복된 기사를 제거하여 총 13,345건을 선별했다. 2차 선별에서는 기사 제목과 본문에 검색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상 ‘심리상담’이 간략히 언급되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사는 제외하여 총 4,537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별했다. 최종 선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10년 이상 심리상담 경력을 갖춘 박사과정생 연구자 2인이 약 두 달에 걸쳐 연구자 간 교차 검토 및 합의를 반복 수행하여, 기사 제목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 주제를 귀납적으로 도출하고, 각 기사를 세부 주제에 포함되도록 면밀하게 분류했다. 도출된 주제는 첫째, 비전문성/비윤리성/법제화 관련 기사, 둘째, 공공정책/민간 기관 홍보 기사, 셋째, 범죄 관련 기사, 넷째, 정신건강 및 상담에 관한 일반 지식 정보 기사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주제별로 기사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기사 본문을 살펴봤고, 네 가지 주제 중 연구문제와 부합하는 비전문성/비윤리성/법제화 관련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다음으로 해당 주제 기사 전문을 스크롤링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연구자가 직접 기사 전문을 웹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과정 중 기존 수집된 자료 외에 주제에 해당하는 기사 16건을 발견하여 분석 대상에 추가했다. 스크롤링한 기사 전문은 내용을 모두 읽고 연구자 간 합의를 통해 기사 제목이 비전문성/비윤리성/법제화와 관련되어 있으나 기사 본문은 다른 주제에 해당하는 기사를 골라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총 186건의 기사가 분석에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최종 선별되었다. 최종 선별 기사는 ‘자격’ 키워드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또한 2차 선별 기사 중 비중은 4.1%로 낮았으나, 주로 사회적 이슈가 될만한 특정 사건이 보도된 기사들이었다. 이러한 기사는 대중에게 노출될 경우, 정부나 사설 기관의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용으로 대량 양산된 기사들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2차 선별 기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공공정책/민간 기관 홍보 기사 수는 총 3,282건

표 3. 심리상담 관련 검색 키워드 및 선별에 따른 기사 수 (단위: 건)

순위	검색 키워드	최초 검색 기사 수	1차 선별 기사 수	2차 선별 기사 수	최종 선별 기사 수
1	심리상담 AND 자격	1,643	1,610	759	74
2	심리상담 AND 전문	8,671	6,920	2,795	37
3	심리상담 AND 법	2,542	2,267	340	13
4	심리상담 AND 범죄	2,584	1,490	187	16
5	심리상담사 OR 상담심리사	1,292	1,058	456	46
	합계	16,732	13,345	4,537	186

(72.3%)이었으나, 기사 형태가 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했다. 해당 주제는 세부적으로 지자체별 상담 정책 홍보 기사(1,717건, 52.3%), 특정 사기업/대학/민간기관 상담 홍보 기사(747건, 22.8%), 민간자격증 광고 및 홍보 기사(631건, 19.2%), 사설상담센터 광고(187건, 5.7%)로 나뉘었다. 홍보 기사는 대체로 정부 정책에 관한 보도자료나 민간 기관과 자격증 광고 및 홍보가 반복 재생산된 형태로, 기사마다 제목과 본문 내용이 거의 일치하여 분석에 부적합했다. 또한 범죄 관련 기사와 정신 건강 및 상담에 관한 일반 지식 정보 기사도 비전문적·비윤리적 행위나 법제화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 문제에 부합하지 않아 선정되지 않았다.

분석 방법

최종 선별된 186건의 기사는 기사 전문 내용을 대상으로 R 4.3.3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 절차로 먼저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하고자 ‘stringr’, ‘textclean’ 패키지로 기사 전문의 불필요한 문자, 연속된 공백을 제거했다. 불용어 및 유사어는 기사 본문 내용을 재검토하여 설정했다. 불용어에는 의미 없는 한 글자와 사람 이름, 직함, 지역명, 단체명, 언론사명, 정치 정당명과 같은 고유 명사와 ‘지난해’, ‘들이’, ‘경우’와 같이 문서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포함했다. 유사어로는 ‘민간’, ‘민간자격’ 등과 같이 ‘민간자격증’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하는 단어들을 처리했다. 그다음 기사 본문을 형태소로 나누기 위해 ‘tidytext’, ‘KoNLP’ 패키지를 이용하여 명사 단위로 토큰화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기사 본문 내용을 하나의 문서 단위로 하고 문서 주제는

명사로 결정되므로 명사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사와 명사구를 키워드로 추출했다(김영우, 2021). 그다음으로 문서에 같은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면 단순히 사용빈도 때문에 특정 토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중복된 단어들을 제거하고, 모든 문서에서 관용적으로 나타나 토픽의 특징을 드러낼 수 없는 단어들은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값이 0에 수렴하는 단어 목록을 만들어 제외하였다. 전처리와 형태소 분류 후에는 심리상담 관련 기사의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빈도수가 높은 상위 30개 단어를 추출했다.

전처리 작업 후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Gibbs 샘플링을 사용하여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모델을 바탕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했다. LDA 토픽 모델링은 문서와 단어 간 동시 출현 확률을 바탕으로 특정 문서에 잠재된 주요 토픽들을 추출한다(Blei et al., 2003, 백영민, 2019에서 인용됨). 분석을 위해 먼저 ‘tm’과 ‘tidytext’ 패키지를 이용하여 문서 단어 행렬(Document-Term Matrix, [DTM])을 만들어서 총 184개 문서와 5,867개 단어로 구성된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서 ‘topicmodels’ 패키지로 LDA 모델을 생성했다.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은 디리클레 분포를 따르고 K , α , η 값을 사전 모수로 활용한다. α 값은 주제에 대한 각 문서의 확률 분포를 결정하고, η 값은 단어들에 대한 각 주제의 확률 분포를 결정하는 초모수다. α 값은 각 문서에 대한 주제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값이 작을수록 소수 주제에 집중한다. η 값은 각 주제에 대한 단어들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값이 작을수록 소수 단어들이 할당된다. K 값은 주제 개수로 높

은 값이면 문서에서 많은 주제를 추정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너무 큰 값은 과적합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작게 설정하면 도출된 주제 간 차별성이 떨어지게 된다. 성능 평가를 하려면 모수들의 최적값을 찾기 위한 조정이 필요한데, 선행연구를 토대로 α 값은 0.1, β 는 0.01, burnin 횟수는 1,000번, iteration 횟수는 2,000번을 투입했다(유무상 외, 2018; 김나영, 홍미영, 2020; 조수민 외, 2021; 유주영, 2022; 이신행, 2023). K 값은 'ldatuning' 패키지를 활용하여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으로 추정했다. 해당 패키지의 Griffiths2004 지수는 후보 모델 성능이 좋을수록 1로 수렴한다. 선별된 기사를 대상으로 실행해 보면, 그림 1처럼 토픽 수가 8개에서 11개까지 성능 지표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성능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따라서 8개~11개 사이 후보 모델을 선정하고, 후보 모델의 토픽별로 β 값을 추출하여 등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20

개씩 추출한 후, 연구자들이 주요 단어가 토픽을 잘 대표하는지, 문서가 잘 분류되었는지, 후보 모델이 텍스트 해석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8개 토픽이 가장 해석 가능성이 큰 모델이라고 합의하였다(김영우, 2021).

그다음으로 토픽명을 짓고자 토픽별로 β 값이 높은 주요 단어 10개를 확인하고, 그중 1순위 단어가 포함된 기사 일부를 추출해서 내용을 검토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각 연구자가 토픽 명을 짓고, 의견을 교환하여 최종 토픽명을 결정했다. 이어서 토픽별 특징을 분석하고자 η 값을 추출했다. 문서별로 η 값이 가장 높은 토픽을 추출하고, 확률이 가장 높은 토픽 번호를 기사 원문에 부여한 다음, 토픽별 주요 단어와 문서 빈도를 확인해서 어떤 토픽으로 분류된 문서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지 알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빈도 높은 단어만 있어서 토픽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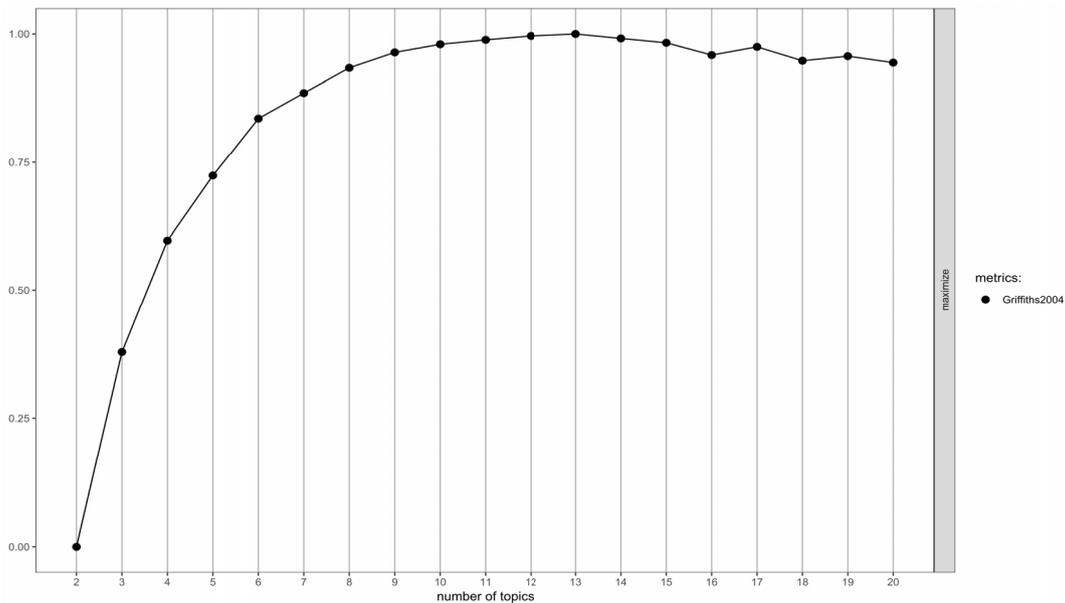


그림 1. 최적 토픽 수 추정을 위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않은 문서는 제거되어 170개의 문서가 빈도 분석에 사용되었다. 문서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토픽 순위를 확인한 후에는 한국상담심리学会의 윤리강령 중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을 참고하여 각 토픽이 어떠한 비윤리성을 내포하는지 비교 분석했다.

더불어 토픽 모델링 분석과 함께 2차 선별과 최종 선별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기사 건수 추이와 기사 내용을 통한 연도별 언론의 관심도를 확인하는 내용 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행되었다. 토픽 모델링 분석은 키워드 중심으로 문서들의 집합에서 특정한 주제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지만, 언론 기사를 분석에 활용하는 이점인 사회적 이슈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토픽 모델링 분석 전, 자료 선정을 위해 2차 선별과 최종 선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비전문적·비윤리적 행위 관련 기사의 흐름과 법제화 논의의 전개 과정이 확인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슈와 논의의 흐름이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도록 돕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종 선별 기사는 연도별로 분류하고 사회적 이슈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일부 기사 제목을 결과에 직접 제시하였다. 기사 제목 선택의 경우, 중복된 사건과 의견을 다루는 기사는 하나의 주제로 묶고 그중 선정성에 치중하지 않은 기사 제목을 골라서, 최대한 해당 연도에 노출된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2차 선별 기사와 최종 선별 기사 수를 집계하여, 네 가지 세부 주제를 통해 심리상담 전반에 다룬 2차 선별 기사의 대중 노출 빈도와 비전문적/비윤리적/법제화 관련 최종 선별 기사의 대중 노출 빈도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했다.

결과 제시는 먼저 연도별 언론의 관심도 분석을 기술하여, 최종 선별 기사에서 나타난 주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 분석과 토픽 모델링 결과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토픽별 빈도 분석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각 토픽과 해당 토픽이 어떤 윤리강령 조항을 위배했는지 기술했다.

결 과

연도별 언론의 관심도 분석

2009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심리상담 비전문성/비윤리성/법제화 관련 연도별 기사 건수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기사 건수는 2016년부터 차츰 늘어나다가 2019년에는 2016년도 대비 2배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기사 건수가 주춤하는 듯했으나 2022년에는 32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2차 선별 자료와 비전문성/비윤리성/법제화 관련 기사 빈도수는 대체로 우상향하는 전개가 나타났다. 심리상담 전반에 관련한 기사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대중에게 노출되면서, 비전문성/비윤리성/법제화 관련 기사도 함께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에는 심리상담 전반에 관련한 기사가 우세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심리상담 전반에 관련한 기사가 감소되었지만, 비전문성/비윤리성/법제화 관련 기사는 증가했다.

연도별 주제 흐름은 다음과 같다. 학교 상담 법제화가 최초 논의된 2009년에는 경륜, 경정 등 도박중독에 개입할 수 있는 상담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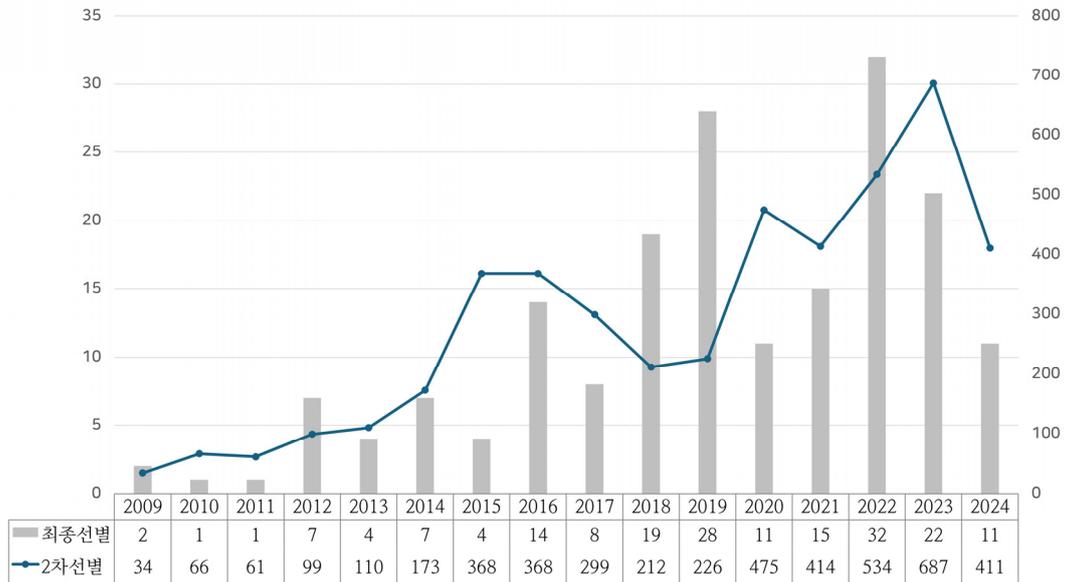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2차 선별 및 최종 선별 기사 수

많지 않다는 개별 영역 상담 인력 부족에 관한 기사만 확인되었고, 학교 상담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학교폭력 상담, 전문가에 맡겨야」(신순갑, 2012), 「‘學暴’ 전문 상담교사 대부분 ‘非전문가」(박영수, 2012)와 같은 기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2013~2015년에는 「대구 중·고교 26곳 전문상담사 없다」(구대선, 2013), 「전문상담교사 있는 초등학교 전국 4곳뿐 주먹구구 대응」(김유나, 2014), 「남발되는 민간자격증 한곳서 성격 다른 200개 자격증 발급」(이정아, 2014), 「상담심리사 꿈 짓밟는 ‘공공기관 열정페이」(이지수, 2015)와 같은 기사에서 학교 상담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심리상담과 관련한 민간자격증이 다수 확인되어 자격증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시작되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로 인한 국가 재난 사태, 각 기업의 감정노동자를 위한 기업상담(EAP) 유치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심리상담 수요가 점차 증가했지만, 심리상담사는 열악한 근무 조건에 처해 있다는 현실도 함께 언급되었다. 2014년에 국감을 통해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3~2014년까지는 33건에 불과하던 각종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교육과정 광고 및 홍보 기사가 2015년에만 약 7배(239건)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자격증 시장에서 심리상담 영역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자격증 취득 수요를 노린 수준 미달의 민간자격증 장사가 점점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6년에는 「상담사 관리 사각지대...국가 자격증도 없어」(남은주, 2016a), 「고객과 성관계 맺고, 동영상 찍은 뒤 다른 여성에게 보여 주며 상담한 심리상담사」(박태훈, 2016), 「‘우울증 취준생’ 느끼는데... 대학상담센터는 “기다려”」(김선영, 2016), 「초등생 학교폭력 느끼는데 상담교사 배치율 1.5% 불과」(신하영, 2016) 등

과 같은 기사가 나왔다. 당시 2명의 상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한 명은 준강간 및 감금 혐의로 논란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강간 미수 전과자로 규제 없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학교 상담 현장에는 여전히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미진한 상황이었으며, 대학상담센터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실태가 조명되기도 했다.

2017년에는 「한국상담학회 세미나 “상담사 자격 강화해야, 상담사법 제정 필요”」(김태준, 2017), 「심리상담소서 성추행...‘묻지마 자격증’ 판친다」(유준호, 2017), 「“석달이면 땀니다”...공신력 없는 상담자격증만 500개 넘어」(이현진, 2017)와 같은 기사가 등장하며, 2016년부터 이어진 상담실 안 범죄 행위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가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포항, 경주 지진이 발생하여 재난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논의되었고, 자격증 시장의 광고 및 홍보는 전년도보다는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성행했다.

2018년에는 「국민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사법 반드시 필요」(권수영, 2018), 「국민을 위한 심리상담, 국민건강보험 모두 적용돼야」(신효정, 2018), 「심리상담사 관리 구멍... 자격증 4000종에 문화센터도 발급」(전현진, 2018), 「대학생 정신건강 위협, 심리상담 국가 지원 전무」(김영태, 2018),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해준다며 성폭행한 유명 심리상담사」(강진구, 2018), 「우울증 등 의심 뎀...모바일 앱에 고민 털어놔요」(김지영, 2018) 등 다양한 주제로 기사가 나왔다. 전년도에 이어 심리상담 법제화와 관련한 이슈 파이팅이 계속 진행되었고,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담론으로 등장하기

도 했다. 건강보험 논의는 심리상담이 점차 국민에게 보편복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서비스로 여겨지는 과정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상담사 관련 민간자격증은 4,000개에 육박한다는 실태가 보도 되었고, 또 다시 비전문적 상담자가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범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 외에도 민간 시장 활성화에 따라 사설 심리상담센터와 온라인, 모바일 상담 홍보 기사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다.

2019년에는 「“거부하면 극복 과정이라고...” 성폭력 피해자 성폭행한 심리상담사」(박은주, 2019), 「동성애 ‘전환 치료’ 시도한 상담사 첫 퇴출」(이보라, 2019), 「‘안전 사각지대’ 놓인 심리상담사」(정소영, 2019), 「‘상담심리사’와 ‘심리상담사’는 뭐가 다르지?... 4,400여개 자격증 뽐내나」(황민아, 2019), 「벼랑 끝에 선 대학생 정신건강, ② 예산·인력·전문성 총체적 부실, 상담 신청 후 1~2개월 대기는 기본」(장세풍, 2019), 「전문상담교사 환경개선은 가능한가, 열악한 근무 환경, 상담의 질과 교사 자존감까지 떨어뜨려」(전호성, 2019)와 같은 기사가 나왔다. 이 시기에는 상담센터 운영 주체의 자격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범죄자가 센터를 개소해서 내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실태가 공영방송 취재 탐사 프로그램에서 방영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중에게 심리상담이 친숙해지면서 수요는 증가했지만, 민간자격증은 4,400여 개에 육박하면서 상담사의 전문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었다. 학교 상담과 대학상담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인력 부족은 지속해서 개선되지 않았고, 상담사의 안전 등 처우 문제도 언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회는 비윤리적 행위를 한 상담사의 상담심리사 자격을 박탈하며 윤리적 환

경을 조성하려는 노력과 시도를 이어갔다.

2020년에는 코로나 블루와 심리 방역에 관한 기사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비전문성/비윤리성/법제화와 관련한 기사는 「私費까지 털어 청소년 돕는 청소년 동반자」(김문희, 2020), 「軍 초급간부 5년간 극단 선택 91건… 인권위 “전문 상담관 운영 개선하라”」(김정화, 2020), 「‘트라우마 치료한다며 성폭행’ 유명상담사 2심서 집행유예」(박형빈, 2020)와 같은 내용으로 간간이 보도되었다. 이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별로 심리상담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심리상담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시기였다.

2021년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심리서비스법’ 추진에 준비생들 ‘황당’」(권보경, 2021), 「전자발찌 차고 상담소 취업 뒤 또 몸쓸 짓… 보호관찰소, 새까맣게 물랐다」(이혜리, 2021), 「2030 심리상담 붐 99만 원짜리도 예약 꼭 찻다」(강우량, 2021)와 같은 기사가 등장했다. 정부 발주 연구로 본격적인 법제화 시도가 진행되면서 자격 취득 조건이 이슈로 불어지자, 법제화를 둘러싼 집단별 입장이 보도되었다. 이 와중에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심리상담을 빙자하며 내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청년들의 심리상담 수요가 무척 증가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2022년은 비전문성/비윤리성/법제화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 시대 심리상담 뚝뚝 끊어질까, 학계도 공방 중」(양수민, 2022), 「전자발찌 찬 채로 심리치료 상담자 성추행…2심도 실형」(노혜진, 2022), 「영터리 심리상담사 자격증, 3주 만에 187명이 났었다」(강창욱 외,

2022b), 「상담·지도 학생과 부적절 관계…교수 징계한 상담학회 처분 정당」(김대현, 2022), 「선진국은 변호사·의사처럼 심리사 키워…상담비도 보험처리」(문가영, 2022a), 「목격하거나 친구 잃은 아이도 트라우마 겪는데… 상담교사는 절반뿐」(홍인택, 2022), 「[이태원 참사] 인근 상인 700명 상대할 트라우마 치료 전담 인력 8명뿐」(박혜원, 2022), 「‘오은영 월드’에서 위로받으셨나요?」(임지영, 2022)와 같은 기사 제목이 등장했다. 법제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격 취득 조건에 관한 학계 내, 학계 간 공방이 이어졌고, 법안도 정당별로 약간씩 세부 사항에 차이를 두고 4건이 발의되어 법안을 자세히 비교한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민간자격증 난립에 관한 문제 제기는 기획 기사로 다뤄지며, 대중화된 심리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상담을 위한 윤리적 책임이 언급되기도 했다. 새로운 범죄 행위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전년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 2심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고, 지도교수와 학생 간 비윤리적 관계가 민사 사건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학교 상담 현장은 꾸준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사회적 재난 사태에 투입하는 심리상담의 필요성이 주목되기도 했다. 더불어 심리상담 관련 대중매체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중이 기대하는 심리상담의 즉각적 효과성과 현실 사이의 간극, 내담자 개인정보보호 문제, 건강보험 적용과 상담료 문제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2023년에는 「60%가 비정규직… “전문성 인정할 법제화 시급”」(윤준호, 2023), 「“1시간에 10만 원, 우울증 상담해드려요”…상담 자격증, 만나절이면 취득?」(권선미, 2023), 「‘마음 상담’

받는 경찰 5년 새 2배↑…전문상담사는 지역에 1~2명」(손의연, 2023), 「교사들 마음 건강 빨간불 켜졌는데 교원치유센터 상담사 1명당 2만 명 담당」(송민섭, 2023), 「초교 ‘위클래스’ 구축률 59%뿐… 정신질환 조기 발견 기회 놓쳐 [가난한 ‘금쪽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조율 외, 2023)와 같은 기사가 나타났다. 언론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학교, 경찰, 군대 등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태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는 고스란히 내담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리상담 분야를 대표할 만한 국가공인자격증이 법적으로 설정되지 않고 민간자격증은 남발된 상태가 유지되어, 내담자가 전문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혼란을 겪는 상황이 여러 기사에서 다뤄졌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가로 책정된 상담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내담자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면서, 국가 차원의 공공정책과 사회서비스로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 논해지기도 했다.

뒤이어 2024년 6월까지 「심리상담 법제화를 위한 노력과 열망」(이상민, 2024), 「“0명, 그나마 0.6명”…나눌 손 없는 심리상담 치료 현장」(안승길, 2024) 등과 같은 기사가 등장했다. 이 시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심리상담 관련 정책인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바우처를 이용한 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지자체별로 이용 독려를 위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이와 함께 ‘누가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전문가인가’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의뢰서 작성 기관’에 관한 논란이 이어졌고, 학회는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 심리상담 관련 모범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는 법제화 기획 기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키워드 분석

심리상담 비전문성/비윤리성/법제화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위 30개 키워드는 표 4와 같다. 100회 이상 자주 등장하는 상위 빈출 단어는 ‘성폭력’, ‘자격증’, ‘전문성’,

표 4. 심리상담 비전문성/비윤리성/법제화 관련 기사 상위 빈출 단어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성폭력	196	11	성관계	58	21	혐의	44
2	자격증	196	12	자살	58	22	부족	43
3	전문성	112	13	대학교	54	23	재판	42
4	피해	108	14	우울	54	24	수련	41
5	전문가	87	15	인력	54	25	수요	41
6	민간자격증	77	16	정부	54	26	발급	38
7	법제화	73	17	수준	49	27	현장	38
8	기준	67	18	등록	48	28	능력	37
9	보건복지부	67	19	제도	48	29	박사	37
10	국가공인자격증	61	20	해결	45	30	발표	37

‘피해’였다. 상위 30개 키워드 중 ‘자격증’, ‘전문성’,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등록’, ‘발급’ 등은 각종 자격증이 전문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키워드로 분류할 수 있고, ‘전문가’, ‘인력’, ‘부족’, ‘수요’, ‘현장’ 등은 심리상담 수요에 비해 현장 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에 관한 키워드로 보인다. ‘법제화’, ‘기준’, ‘정부’, ‘제도’, ‘수련’, ‘박사’는 법제화 내용 중 자격 취득 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며 발생한 키워드에 해당하고, ‘성폭력’, ‘성관계’, ‘협의’, ‘재판’은 모범이 제정되지 않아 비전문적·비윤리적 범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지 못하는 실태와 관련한 키워드다. ‘자살’, ‘우울’, ‘발표’는 국내 정신건강 실태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공공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성을 내포하는 키워드로 볼 수 있다.

토픽 모델링 및 내용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추출된 8개 토픽 명과 β 값에 따른 상위 10개 주요 단어는 표 5와 같다. 토픽 1은 ‘피해’, ‘행동’, ‘접근’, ‘지식’, ‘전문가’, ‘윤리’, ‘과학’, ‘해결’, ‘의미’, ‘충격’과 같은 단어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성과 윤리적 민감성을 기반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심리상담, 비전문적 심리상담으로 인한 내담자 피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토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계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비과학적·비윤리적 행위를 실시한 심리상담사를 향한 학회의 자격 박탈 및 학회 영구 제명 결정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다. 이에 해당 토픽을 ‘비과학적 개입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심리상담 환경’으로 명명했다.

토픽 2는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인력’,

표 5. 토픽 명 및 토픽별 주요 단어

Topic 1. 비과학적 개입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심리상담 환경			Topic 2 개별 상담 영역에서 나타난 전문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			Topic 3. 영터리 돈벌이 상담의 심리상담 현장 침입		
순위	단어	β	순위	단어	β	순위	단어	β
1	피해	.0112	1	전문상담교사	.0154	1	사례	.0106
2	행동	.0112	2	전문성	.0145	2	영터리	.0095
3	접근	.0102	3	인력	.0112	3	사실	.0089
4	지식	.0097	4	학생	.0108	4	성폭력	.0083
5	전문가	.0087	5	생활	.0103	5	업체	.0083
6	윤리	.0078	6	고등학교	.0094	6	문의	.0077
7	과학	.0078	7	부족	.0089	7	반응	.0077
8	해결	.0073	8	배치	.0084	8	절차	.0071
9	의미	.0073	9	자료	.0080	9	홍보	.0071
10	충격	.0073	10	증가	.0075	10	문턱	.0059

표 5. 토픽 명 및 토픽별 주요 단어

(계속)

Topic 4. 질 낮은 상담에 노출된 취약한 내담자의 피해			Topic 5. 비전문적 민간자격증 난립			Topic 6 심리상담 관련 정책 미비와 혼란		
순위	단어	β	순위	단어	β	순위	단어	β
1	고민	.0124	1	자격증	.0400	1	자살	.0150
2	친구	.0114	2	등록	.0169	2	전문가	.0148
3	전화	.0098	3	민간자격증	.0146	3	수준	.0129
4	반복	.0078	4	능력	.0142	4	전문성	.0116
5	감정	.0078	5	기준	.0131	5	우울	.0106
6	걱정	.0078	6	국가공인자격증	.0127	6	현장	.0100
7	우울	.0072	7	발급	.0127	7	발표	.0098
8	신청	.0067	8	지도	.0100	8	정신건강의학	.0087
9	가명	.0062	9	취업	.0100	9	대학교	.0087
10	목적	.0062	10	개발	.0096	10	임상 심리	.0079
Topic 7. 심리상담 현장의 규제 없는 현실을 악용한 성범죄			Topic 8. 심리상담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순위	단어	β	순위	단어	β			
1	성폭력	.0831	1	자격증	.0276			
2	성관계	.0260	2	법제화	.0221			
3	피해	.0251	3	보건복지부	.0127			
4	혐의	.0201	4	수련	.0124			
5	재판	.0192	5	박사	.0112			
6	전자발찌	.0169	6	전공	.0106			
7	강제	.0142	7	전문성	.0103			
8	사이코드라마	.0128	8	학위	.0100			
9	범죄	.0119	9	석사	.0091			
10	처벌	.0114	10	국가공인자격증	.0085			

‘학생’, ‘생활’, ‘고등학교’, ‘부족’, ‘배치’, ‘자료’, ‘증가’와 같은 단어를 포함했다. 해당 토픽에는 학교폭력, 청소년 우울 고위험군이 증

가했지만, 초·중·고에는 전문상담교사 인력이 부족하고, 지방 혹은 도서·산간 지역일수록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태,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과 낮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자살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이 일상에서 온라인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상담 대기가 길어서 상담을 포기하는 현실 등과 관련한 기사가 분류되었다. 자료 수집 시, ‘학교’나 ‘청소년’과 같은 키워드로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이들에 관한 기사가 다수 수집되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심리상담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의 대상으로 개별 상담 영역에 해당하는 학교 현장과 청소년을 꾸준히 주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토픽 명을 ‘개별 상담 영역에서 나타난 전문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로 명명했다.

토픽 3은 ‘사례’, ‘영터리’, ‘사설’, ‘성폭력’, ‘업체’, ‘문의’, ‘반응’, ‘절차’, ‘홍보’, ‘문턱’과 같은 단어를 포함했다. 여기에는 비전문적 민간자격증으로 센터를 개소하고 제공하는 가짜 상담, 비윤리적 상담을 하더라도 규제 없이 운영되는 센터, 심리상담을 돈벌이로만 여기는 비양심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시장 환경에서 안전한 상담소를 찾기 어려운 내담자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가 포함되었다. 이에 해당 토픽은 ‘영터리 돈벌이 상담의 심리상담 현장 침입’으로 명명했다.

토픽 4는 ‘고민’, ‘친구’, ‘전화’, ‘반복’, ‘감정’, ‘걱정’, ‘우울’, ‘신청’, ‘가명’, ‘목적’과 같은 단어를 포함했다. 일반인과 연예인의 고민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대중이 실제 심리상담 현장에서도 콘텐츠와 같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실태, 비전문적 상담자가 할인 및 저가의 상담료를 제시하여 서비스 구매력이 낮은 사회적 계층을 유인한 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문제, 소위 ‘사이비 상담사’들에게 속아 심리

적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내담자가 겪는 피해, 위기 상담 현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전문인력이 장기 근무할 동기가 저하되어 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상담을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에 관한 기사가 분류되었다. 그래서 해당 토픽은 ‘질 낮은 상담에 노출된 취약한 내담자의 피해’로 명명했다.

토픽 5는 ‘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능력’, ‘기준’, ‘국가공인자격증’, ‘발급’, ‘지도’, ‘취업’, ‘개발’과 같은 단어가 주요했다. 이 토픽에는 매년 ‘심리상담’이나 ‘심리상담사’가 포함된 민간자격증이 남발되는 실태가 주로 반영되었다. 2019년 5월 한국일보 기사는 2018년 기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4,446개로 전체 민간자격증 중 12%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박지윤, 2019b), 2023년 9월 매일경제 기사에는 내실 없이 운영하는 수준 미달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증이 1,083개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증이 3,375개가 남은 현실을 지적했다(이지홍, 2023). 이러한 실태는 성범죄자 등 윤리적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간단한 절차로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여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상담 시장을 교란하는 데 작용했다. 이는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심리상담의 공급자나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가 모두 증가한 결과로 대규모 심리상담 시장이 등장하고, 자격증이 주요한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요컨대, 언론은 자격 취득 과정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비는 미비한데, 자격증 장사꾼들이 심리상담 자격증을 돈벌이가 되는 시장으로 주목한 결과라고 풀이했다(박창규, 2015). 오랜 시간에 걸쳐 보도된 이 고질적인 문제에 관한 토픽 명은 ‘비전문적 민간자격증 난립’으로 명명했다.

토픽 6에는 ‘자살’, ‘전문가’, ‘수준’, ‘전문성’, ‘우울’, ‘현장’, ‘발표’, ‘정신건강의학’, ‘대학교’, ‘임상 심리’가 분류되었다. 해당 토픽에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증가하는 등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면서 정부가 정신건강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상황이 반영된 기사가 주로 등장했다. 대체로 정책의 필수 요건으로 전문성이 보장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초점이었다. 기사에는 서비스 공자로서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법, 심리상담사가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건, 내담자 지원에 사비를 사용해야 할 만큼 열악한 상황에 놓인 상담자 처우 개선 및 예산 확보, 청소년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심리상담 관련 사회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과 관련한 정책 제안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해당 토픽은 ‘심리상담 관련 정책 미비와 혼란’로 명명했다.

토픽 7은 ‘성폭력’, ‘성관계’, ‘피해’, ‘협박’, ‘재판’, ‘전자발찌’, ‘강제’, ‘사이코드라마’, ‘범죄’, ‘처벌’과 같은 단어가 주요했다. 해당 토픽은 강제추행, 준강간, 유사강간, 감금, 불법촬영물 유포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 및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을 다룬 기사들로 이루어졌다. 기사에 제시된 범죄 행위에 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상담 현장은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으로 인해 의존성에 기반한 위력이나 그루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각별히 윤리적 행위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언론은 강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센터를 운영하며 심리상담을 병자해성범죄를 자행한 사건, 성추행으로 학회에서 제명된 상담사가 이후에도 팟캐스트 진행자 활동을 이어가는 현실에 주목하며, 상담센터

를 개소하고 운영할 자격을 규제할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요 학회는 윤리규정에 따라 치료적 관계에서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제의 강제력과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남은주, 2016b; 박지윤, 2019a). 이에 해당 토픽 명은 ‘심리상담 현장의 규제 없는 현실을 악용한 성범죄’로 명명했다.

마지막으로 토픽 8은 ‘자격증’, ‘법제화’, ‘보건복지부’, ‘수련’, ‘박사’, ‘전공’, ‘전문성’, ‘학위’와 같은 단어를 포함했다. 기사에는 법제화의 필요성과 함께, 전문성을 보장하는 국가공인자격 취득 조건이 이슈로 불어진 상황이 보도되었다. 기사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대표하는 명칭, 필수 자격 취득 조건으로써 전공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 갈등이 기술되었다. 그뿐 아니라 일부 기사에는 인접 직역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제정될 법이 보장하려는 전문적 심리상담 행위가 현재 그들이 수행하는 의료 행위로서 심리치료 영역을 넘어서지 말 것을 강조하며 법안에 반발을 보인다는 내용도 있었다(문가영, 2022b). 또한 심리상담 교육과정 표준화와 수련 과정 제도화, 상담 비용 정책 필요성, 비전문적 상담행위 제재 등 신뢰할 수 있는 심리상담 현장을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설명한 기사도 있었다. 따라서, 해당 토픽은 ‘심리상담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으로 명명했다.

문서 빈도에 따른 토픽 순위는 그림 3과 같다. 이를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상담심리사 윤리강령(한국상담심리학회, 2024)과 비교하여 토픽별 윤리적 위반 사항을 살펴봤다. 문서별로 가장 많이 언급된 토픽은 토픽 7 ‘심리상담 현장의 규제 없는 현실을 악용한 성범죄’

로 총 37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제였다. 해당 토픽에는 심리상담사와 내담자, 수퍼바이저와 수련생 간 발생한 성범죄 행위에 관한 내용이 주로 포함되었다. 이는 윤리강령 중 ‘4조 상담 관계’에서 ‘가. 다중관계’, ‘나. 성적 관계’와 ‘7조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에서 ‘다. 수련감독자와 수련생 관계’가 주요하게 위반된 비윤리적 행위다. 또한 ‘3조 내담자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에서 ‘가. 내담자 복지’, ‘1조 전문가로서의 태도’에서 ‘다. 자격 관리’도 위반되었다. 윤리강령에 따라 상담자는 내담자,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과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고, 내담자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담자 개인이 윤리를 위반하더라도 심리상담

모법의 부재로 인해 공적인 규제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규제 공백을 이용하여 심리상담 현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실태가 기사와 공영방송에 노출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그다음으로 토픽 6 ‘심리상담 관련 정책 미비와 혼란’은 34개 문서, 토픽 2 ‘개별 상담 영역에서 나타난 전문인력 부족과 열악한 처우’는 30개 문서, 토픽 8 ‘심리상담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은 26개 문서, 토픽 5 ‘비전문적 자격증 난립’은 20개 문서 빈도를 보이며 뒤를 이었다. 이 네 가지 토픽은 ‘1조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2조 사회적 책임’과 두드러진 연관성이 있다. 특히, 이 토픽들은 2조의 ‘가. 사회와의 관계’에서 1항 “상담심리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 기준을 존중하고,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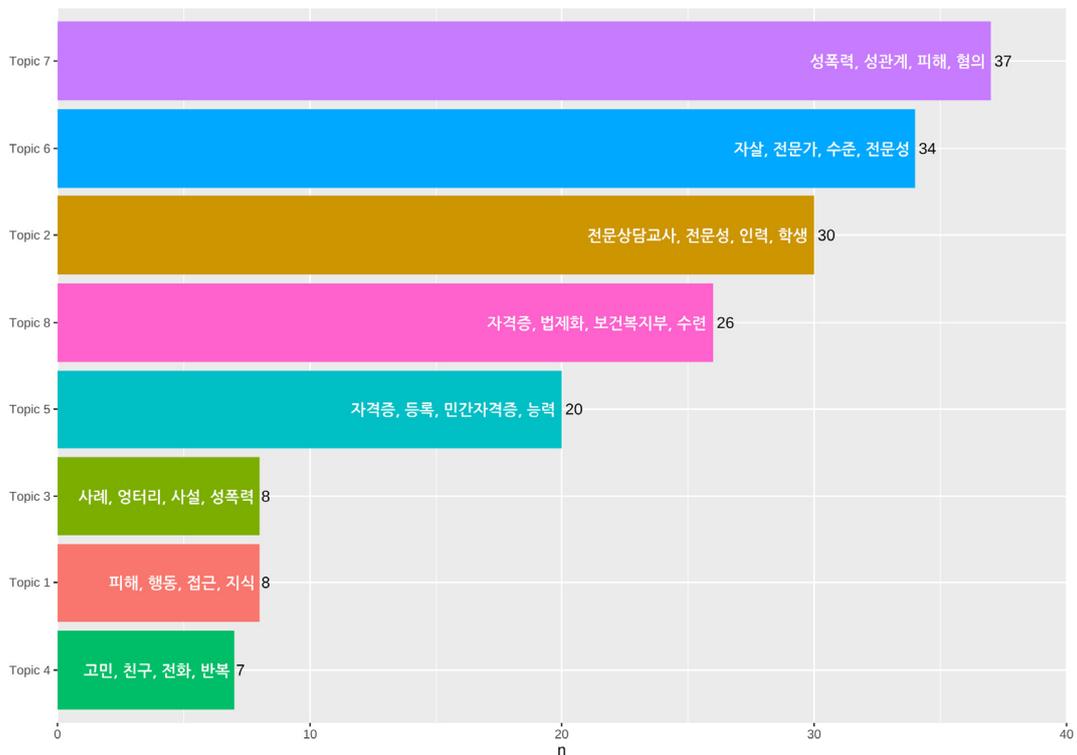


그림 3. 토픽별 주요 단어 및 문서 빈도

공익과 상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심리상담 관련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대변한다. 특히, 언론은 심리상담 분야가 사회적 책임에 성실하게 응답하려면 무엇보다도 1조의 ‘가. 전문적 능력’과, ‘다. 자격 관리’가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매년 지적하고 있다.

토픽 3 ‘엔터리 돈벌이 상담의 심리상담 현장 침입’은 8개 문서, 토픽 1 ‘비과학적 개입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은 심리상담 환경’ 8개 문서, 토픽 4 ‘질 낮은 상담에 노출된 취약한 내담자의 피해’는 7개 문서로, 이 토픽들은 앞서 높은 빈도를 차지한 토픽들로 발생한 영향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심리상담 현장에서는 ‘3조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을 위반하는 사건이 매해 발생했다. 일부 비전문적 현장에서 내담자 복지가 저해되고,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으며,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비전문적·비윤리적 행위가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마다 대중은 심리상담의 전문성에 대해 혼란을 느꼈다(홍예지, 2016).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포항과 경주 지진,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증 증가, 그리고 높은 자살률 등으로 정신건강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함께 미디어 매체에서 심리상담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며,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대중의 수요도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언론은 여러 기사에서 전문가 집단을 향해 ‘1조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관련된 전문적·윤리적 준비가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심리상담이

사회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이행하길 요구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별 상담 영역에서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진 2009년부터 전반적 상담 영역에서 활발히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보도된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행위 실태를 토픽 모델링 분석으로 확인했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문서 빈도가 가장 높은 토픽 7은 규제 없는 현실을 악용한 성범죄에 관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로 ‘성폭력’, ‘성관계’와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성범죄 기사를 포함했다. 토픽 6, 2, 8, 5는 국내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심리상담 영역이 담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인력 배치 및 상담자 처우 개선, 심리상담 법제화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와 연결하여 주요하게 언급되는 단어는 ‘자격증’과 ‘전문성’이었다. 특히, 약 3,300~4,400개에 달하는 민간자격증의 남발은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토픽 3, 1, 4는 미비한 법과 제도로 인해 내담자가 겪게 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설명하는 기사들을 포함했다. 분석을 통해 발견된 토픽은 한국상담심리학회와 상담심리사 윤리강령과 비교하여, 토픽별로 윤리강령의 세부 사항을 위반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비전문적·비윤리적 행위 실태를 살펴보는 접근은 기존 연구에서 심리상담 모법의 필요성을 역사적, 법률적, 윤리적으로 살펴본 것에 더해 법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드

러내면서 법제화 당위성의 경험적 근거를 보여준다. 즉, 기존 연구가 법이 있어야 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논하며 법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시도했다면, 본 연구는 법의 빈자리 그 자체를 보여주며 법제화의 시급성을 촉구하고자 했다.

규제 없는 현실을 악용한 성범죄에 관한 문서 빈도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언론이 범법 행위를 사회적 이슈로 주목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 내용에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과 만나는 상담자가 안전하게 검증된 기술을 발휘하는 전문가여야 한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었다. 언론의 태도는 심리상담 분야가 전문 영역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퍼져 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언론은 다수의 기사를 통해 전문성을 기대하고 찾아간 공간이 범죄 현장으로 뒤바뀐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심리상담을 빙자한 범법 행위가 벌어져도, 심리상담 관련 모법이 부재한 현실에서는 비윤리적 상담자를 심리상담사 자격에 의해 처벌하거나 다시는 센터를 개소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장치가 없다. 단지 그들에게 형법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과 같은 법령을 적용하여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뿐이다. 즉, 처벌을 받고 진과자가 되어도, 상담 활동을 막지는 못하는 뜻이다. 언론은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로 인해 심리상담 현장에서 가장 벌어지지 않아야 하는 문제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성폭력과 같은 범죄 행위와 내담자가 겪는 피해를 우리 사회에 전달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민간자격증 난립 실태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민간자격증 남발은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사문 등 심리서비스 관련 내담

자 피해 사례를 급증하게 하는 원인이다(원성두, 2022). 국가공인자격증인 ‘청소년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가 심리상담 분야를 대표하지 못했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주요 학회의 민간자격증이 우세해지면서, 상담 시장에서는 전문성과 자격에 관한 혼란이 가중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기간 동안 주요 학회가 제시하는 교육 및 수련 과정에 현저히 도달하지 못한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으로 등록되었고, 몇몇 민간자격증은 8시간 만에 자격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이를 악용하여 SNS, 오픈채팅과 같은 채널에서는 수준 미달 자격증을 이용하여 저렴한 상담료로 심리상담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비양심적 행위자도 등장했다. 언론은 이러한 현실로 인해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을 이용한 내담자들이 입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도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이 ‘누가 전문가인지 알지 못해서’ 겪는 불편함을 설명했다(권선미, 2023). 상담 현장을 취재한 한 기자는 “심리상담 업계는 도떼기시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너도나도 돛자리 깔고 전문가 행세하는 수준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많습니다”라고 일갈하며, 규제 없는 무분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했다(강창욱 외, 2022a). 이제 심리상담 영역에서는 남발된 민간자격증을 정리하고, 대중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인자격증을 신설하며,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언론은 방송에 편성된 무분별한 심리상담 콘텐츠의 폐해를 지적했고, 공공영역에 충분한 심리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성과 상담자 처우 개선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심리상담 관련 콘텐츠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방송과 인터넷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정신질환 정보, 공개되어서는 안 될 심리검사 도구가 노출되었다. 또한 일부 비윤리적 행위자가 내담자 동의 없이 상담 내용이 포함된 후기를 SNS 게시하여 사설 센터를 홍보하는 등 심리상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정제되지 않은 심리상담 빅데이터는 내담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정신건강에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대중이 자기 상태를 부정확한 절차로 특정 ‘진단명’에 제한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대중은 점차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짜 전문가를 구별할 기준에 도달할 가능성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언론은 정부를 향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명시한 분야에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있지 않은 점과 상담자 처우가 열악하여 개별 상담 영역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내담자가 떠안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결국, 건전한 서비스와 불건전한 서비스가 경쟁하는 환경으로 인해 내담자는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에 노출될 확률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실태였다(강창욱 외, 2022c).

이처럼 혼돈이 더해가는 상황을 질서 있게 정돈하고, 심리상담 서비스 품질 저하를 예방하려면 심리상담 행위에 관한 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향후 제정될 심리상담 관련 법안에는 센터 개소 자격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규제와 처벌이 포함된 법이 필요하다. 이는 어떤 조건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설정할지와 센터 운영의 주체로 삼을지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 현재는 별다른 규제 없이 심리상담센터가 개소

된다. 수준 미달 자격증뿐 아니라 심지어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도 심리상담센터가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내담자가 범죄 행위에 노출될 확률을 제거하기 어렵다. 또한 내담자는 어떤 센터가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 직접 구별해내기 힘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일일이 사설센터 상담자의 학위와 자격증의 공신력 여부를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은 비경제적이다. 병원이나 법률사무소는 운영자의 실력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공인된 전문가가 의료 혹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다른 정보 없이도 알 수 있다. 심리상담센터 운영도 의료, 법률 영역처럼 명시된 국가공인자격과 센터 개설 및 설치와 관련한 근거가 절실하다. 현실을 반영한 구체화 된 법률과 정책은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면 평균 이상의 공인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심리상담을 빙자한 비전문적·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내담자가 입을 피해를 알리고, 심리상담 전문가 집단에게 과학에 기반한 전문 행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요구했다. 즉, 우리 사회는 언론의 입을 빌려 심리상담 전문가 집단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되묻고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법제화를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심리학계와 상담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집단은 다수의 연구와 정책 토론회 등을 수행하고, 법제화 논의에 힘을 더해 왔다. 그간 그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 교육과정의 필요성, 근거 기반 심리상담 실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력에게

만 심리상담을 수행하도록 한정하는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왔고, 해당 내용이 법제화에 반영되기를 촉구해 왔다(서영석, 안하얀, 2022).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전문가 집단 내 전문 자격 관련 갈등,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같은 인접 직역간의 갈등은 그다지 좁혀지지 않았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규모 심리상담 관련 정책이 시작된 시점에서도 전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했다. 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들은 계류하다가 폐기되었다. 모법이 부재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심리상담 현장의 혼란스러운 실태가 지속되자, 현장은 우리 사회의 급증한 심리상담 수요를 담아내기 버거운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드러난 비전문적·비윤리적 행위들은 심리상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다. 강제력과 구속력으로 규제되지 못한 비전문적·비윤리적 상담행위는 고스란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내담자가 겪을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하다.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자인 내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한 환경은 심리상담 윤리의 일차적 책임인 ‘내담자 복지’에 위배된다. 상담자 개인이 아무리 윤리적 행위를 할지라도, 구조와 환경이 비윤리적이라면 내담자는 환경으로 인해 해를 입는다. 이제 현장에서 내담자를 만나는 실무 상담자는 언론의 시선과 대중이 바라본 심리상담 현장의 혼란한 실태를 직시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내담자가 처한 불건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심리상담 법제화와 정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실무 상담자뿐 아니라 상담심리학자,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를 우선시해야 하는 행정기관과 입법기관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문가 집단 안팎에서 법안 내용을 합의하고, 조속히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자료 분석을 위한 2차 선별 시, 자료에는 심리상담 관련 광고 및 홍보 기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홍보는 민간자격증 및 교육프로그램, 사기업 심리상담 홍보, 사설 심리상담센터 홍보, 지자체 정책 홍보로 이루어졌고, 이 중 민간자격증 및 교육프로그램이나 사설 심리상담센터 홍보는 비전문적·비윤리적 심리상담 시장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예상되었다. 그러나 해당 자료를 포함할 경우, 큰 비중으로 인해 문서의 주제를 변별하는 데 지장이 생겨, 부득이하게 따로 선별하여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 윤리강령을 위배한 홍보 기사에 초점을 두면,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비전문적 심리상담 시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언론에서 보여주는 심리상담 환경을 확인하는 작업은 전문가 집단 외부의 시각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하지만 언론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이목을 끌 만한 주요한 사건이 다뤄지기 쉬우므로 집단 내부에서 세밀하게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를 포착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 내 문헌 목소리를 발굴하여, 안전한 환경을 안팎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강우량 (2021년 7월 20일). 2030 심리상담 붐 99만원짜리도 예약 꽉찼다. 조선일보.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7/20/TAOXTSLEXRCNTIBA6AZLYD2TGU/>
- 강진구 (2018년 9월 19일). [단독]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해준다며 성폭행한 유명 심리상담사.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81627749020>
- 강창욱, 이동환, 정진영, 박장군 (2022년 5월 23일a). [상담시장 X파일] <1화> 야, 너도 딸 수 있어, “무조건 합격이세요” 영터리 심리상담사, 기자도 뺏다.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03881>
- 강창욱, 이동환, 정진영, 박장군 (2022년 5월 24일b). [상담시장 X파일] <2화> 박장군의 심리상담소, 영터리 심리상담사 자격증, 3주 만에 187명이 났었다.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07802>
- 강창욱, 이동환, 정진영, 박장군 (2022년 6월 9일c). [상담시장 X파일] <6화>도폐기 상담시장②, 심리사냐 상담사냐... 심리상담, 법이 없다.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59178>
- 관계부처 합동 (2023).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 보건복지부
- 구대선 (2013년 3월 19일). 대구 중·고교 26곳 전문상담사 없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578785.html
- 권보경 (2021년 5월 24일). 현실과 동떨어진 ‘심리서비스법’ 추진에 준비생들 ‘황당’. **이데일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25046629052200&mediaCodeNo=257>
- 권선미 (2023년 7월 31일). “1시간에 10만원, 우울증 상담해드려요”...상담 자격증, 반나절이면 취득?.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797757>
- 권수영 (2018년 3월 14일) [기고] 국민 정신건강 위해 상담사법 반드시 필요.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8228917>
- 김나영, 홍미영 (2020).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교권침해 관련 언론 기사 분석. **교사교육연구**, 59(3), 475-496.
- 김대현 (2022년 5월 22일). 상담·지도 학생과 부적절 관계...교수 징계한 상담학회 처분 정당.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2219335019567>
- 김문희 (2020년 1월 27일). 私費까지 털어 청소년 돕는 청소년동반자.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1271652047230>
- 김선영 (2016년 4월 5일) ‘우울증 취준생’ 느끼는데... 대학상담센터는 “기다려”. **문화일보**.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16040501071421308001>
- 김수임, 최나연, 정문주 (2021). 국내 심리상담 자격제도 법제화를 위한 제언: 미국과 일본의 사례 검토. **상담학연구**, 22(5), 11-21.
- 김영우 (2021). Do it! 쉽게 배우는 R 텍스트 마이닝. 이지스퍼블리싱(주)
- 김영태 (2018년 8월 27일). 대학생 정신건강 위협, 심리상담 국가 지원 전무. **노컷뉴스**. <https://m.nocutnews.co.kr/news/5021541>
- 김영환 (2022). 심리상담사법 제정의 방향. **법과 정책연구**, 22(1), 295-314.
- 김유나 (2014년 7월 9일). 전문상담교사 있는

- 초등교 전국 4곳뿐 주먹구구 대응.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40709004902>
- 김인규 (2022a). 상담 법제화 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23(3), 1-18.
- 김인규 (2022b). 심리상담 법안에 나타난 심리상담 정체성 탐색. *교육종합연구*, 20(2), 111-126.
- 김정화 (2020년 9월 1일). 軍 초급간부 5년간 극단 선택 91건… 인권위 “전문 상담관 운영 개선하라”.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09/02/20200902011022>
- 김지영 (2018년 2월 4일) 우울증 등 의심뎀… 모바일 앱에 고민 털어놔요.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RVKJRG IU>
- 김태준 (2017년 1월 11일). 한국상담학회 세미나 “상담사 자격 강화해야, 상담사법 제정 필요”.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7674556>
- 나고은, 허난설, 이상민 (2021).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미국의 전문상담사(LPC)와 인증프로그램(CACREP)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6), 1-15.
- 남은주 (2016년 3월 14일a). [단독] 상담사 권리 사각지대…국가자격증도 없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902.html
- 남은주 (2016년 3월 14일b). [단독] 정신적 약점 이용해 ‘성폭력’…법규 없어 처벌도 못해.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901.html
- 노혜진 (2022년 2월 11일) 전자발찌 찬 채로 심리치료 상담자 성추행…2심도 실행.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760091>
- 문가영 (2022년 9월 18일a). 선진국은 변호사·의사처럼 심리사 키워…상담비도 보험처리.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458549>
- 문가영 (2022년 9월 18일b). “우울해요” 생명의 전화 두배 늘었는데…상담사는 ‘통화중’.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10458550>
- 문성원 (2018). 상담 윤리와 관련 법규들과의 관계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4), 1009-1034.
- 박기석, 이운주 (2023). 심리상담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법학논총*, 35(3), 663-691.
- 박영수 (2012년 11월 23일). ‘學暴’ 전문 상담교사 대부분 ‘非전문가’.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12301071243177002>
- 박은주 (2019년 1월 3일). “거부하면 극복 과정이라고…” 성폭력 피해자 성폭행한 심리상담사.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63141>
- 박지윤 (2019년 5월 22일a). [상담실의 악마, 그루밍 성폭력] 심리상담사의 기괴한 요구 “속옷 벗고 성기 그림 그려”. *국민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01249729715>
- 박지윤 (2019년 5월 24일b). [상담실의 악마, 그루밍 성폭력] 강간미수 전과자가 심리

- 상담 센터 열어도 못 막아... 허술한 자격 제도부터 손봐야.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31502388893>
- 박창규 (2015년 10월 20일). 구직자 울리는 '속빈 자격증'.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51020/74263057/1>
- 박철형, 김영근, 송현구, 라수현 (2022). 국민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 법제화 관련 용어 사용 현황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심리상담', '심리서비스', '심리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3(5), 1-19.
- 박태훈 (2016년 3월 15일). 고객과 성관계 맺고 동영상 찍은 뒤 다른 여성에게 보여주며 상담한 심리상담사.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60315002504>
- 박형빈 (2020년 4월 2일). '트라우마 치료한다며 성폭행' 유명상담사 2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2062400004>
- 박혜원 (2022년 11월 9일). [이태원 참사] 인근 상인 700명 상대할 트라우마 치료 전담인력 8명뿐.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109000121&ACE_SEARCH=1
- 백영민 (2019). R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한올아카데미**.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3년 12월 5일). 정신건강정책 '예방-치료-회복'순단계 관리로 대전환: '100만 심리상담'부터 '고용주거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 추진.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79142
- 서영석, 안하얀 (2022). 상담의 전문직화: 법제화를 위한 상담계 내 일치된 노력의 중요성. **상담학연구**, 23(1), 1-15.
- 서은경, 윤정숙, 이정화, 하정희, 허지영 (2023). 2023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 윤리 사례집. **한국상담심리학회**
- 성현모, 안성희, 정유빈, 이상민 (2022). 해외 직업법령 비교를 통한 국내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탐색. **상담학연구**, 23(6), 1-16.
- 성현모, 양난미, 하재필, 이상민 (2023). 심리·상담 서비스의 명칭, 범위, 업무 탐색: 상담심리사와 일반인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2), 357-383.
- 성현모, 이상민 (2022a).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관련 법안 비교 연구. **상담학연구**, 23(3), 19-38.
- 성현모, 이상민 (2022b). 심리상담 법제화의 방향성. **입법과 정책**, 14(1), 195-219.
- 성현모, 이장희, 이은수, 박종성, 이상민 (2022). 심리·상담 분야 국가자격증 명칭 탐색. **교육치료연구**, 14(2), 141-158.
- 손의연 (2023년 10월 5일). '마음상담' 받는 경찰 5년새 2배 ↑...전문상담사는 지역에 1~2명. **이데일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499766635769968&mediaCodeNo=257>
- 송민섭 (2023년 9월 6일). 교사들 마음 건강 빨간불 켜졌는데 교원치유센터 상담사 1

- 명당 2만 명 담당.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06506875>
- 신순갑 (2012년 2월 17일). 학교폭력 상담, 전문가에게 맡겨야.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1202172108235>
- 신윤정, 이지연 (2021). 심리상담서비스 국가 자격 관리 방안 제언: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4), 39-49.
- 신하영 (2016년 9월 10일). 초등생 학교폭력 있는데 상담교사 배치율 1.5% 불과. 이데일리.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548166612778808&mediaCodeNo=257>
- 신효정 (2018년 3월 7일). [왜냐면] 국민을 위한 심리상담, 국민건강보험 모두 적용돼야.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35068.html>
- 안성희, 성현모, 김보람, 이상민 (2022). 업무독점형 vs. 능력인정형: 심리상담 민간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떤 형태의 자격이 필요한가?. 상담학연구, 23(5), 21-36.
- 안성희, 성현모, 이상민 (2022). 최소 응시자격 논란: 어떻게 심리상담 전문가를 선발·양성해야 하는가?. 상담학연구, 23(4), 1-12.
- 안승길 (2024년 2월 26일). “0명, 그나마 0.6명”...나눌 손 없는 심리 상담 치료 현장.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9549>
- 양수민 (2022년 4월 7일). 코로나 시대 심리상담 뚝지만 품질 딜레마, 학계도 공방 중.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732>
- 원성두 (2022).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적용 현황, 향후 방향성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3), 257-270.
- 유무상, 정수연, 김건후, 손철 (2018). 지역신문 기사 자료와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해변 관련 계절별 현안분석. 지역연구, 34(4), 19-34.
- 유주영 (2022).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슈 분석: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언론 보도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60(1), 205-234.
- 유준호 (2017년 1월 20일). 심리상담소서 성추행...‘묻지마 자격증’ 판친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7685938>
- 윤준호 (2023년 4월 24일). 60%가 비정규직... “전문성 인정할 법제화 시급”.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24514476>
- 이만우 (2021). 비의료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 : 통합을 위한 원칙과 과제. 이슈와 논점, 1856
- 이만우, 허종호 (2024). 심리상담의 법·제도화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 심리상담 인력의 자격기준 규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6(1), 137-186.
- 이보라 (2019년 2월 8일). 동성애 ‘전환치료’ 시도한 상담사 첫 퇴출.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902080600085>
- 이상민 (2020).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547-557.
- 이상민 (2024년 6월 10일). 심리상담 법제화를

- 위한 노력과 열망.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opinion/readers-opinion/article/202406100955018>
- 이신행 (2023). 온라인 댓글의 주제 분석을 위한 토픽 모델링: 이슈 포착과 분류에 활용 가능한 LDA와 BTM의 비교와 검증. **한국언론학보**, 67(4), 89-123.
- 이정아 (2014년 10월 8일) 남발되는 민간자격증 한곳서 성격다른 200개 자격증 발급. **헤럴드경제**.
<https://mbiz.heraldcorp.com/view.php?ud=20141008000089>
- 이지수 (2015년 3월 1일). [단독] 상담심리사 꿈 짓밟는 ‘공공기관 열정페이’.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50301002271>
- 이지홍 (2023년 9월 22일). “필라테스 선생님 뭘 배우신거예요?”...난립에 자격증 종류만 1215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0836178>
- 이현진 (2017년 6월 16일) “석달이면 댁니다” 공신력 없는 상담자격증만 500개 넘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7061611961>
- 이혜리 (2021년 9월 22일). 전자발찌 차고 상담소 취업 뒤 또 목쓸 짓... 보호관찰소, 새까맣게 몰랐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9/23/20210923009004>
- 임연수 (2023).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쟁점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5(1), 431-443.
- 임지영 (2022년 7월 20일). ‘오은영 월드’에서 위로받으셨나요?.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24>
- 장세풍 (2019년 7월 15일). 벼랑 끝에 선 대학생 정신건강, ② 예산·인력·전문성 총체적 부실, 상담신청 후 1~2개월 대기는 기본.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read/319462>
- 전현진 (2018년 4월 4일). 심리상담사 관리 구멍... 자격증 4000種에 문화센터도 발급. **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40401071039310001>
- 전호성 (2019년 12월 16일). 전문상담교사 환경개선은 가능한가, 열악한 근무환경, 상담의 결과 교사 자존감까지 떨어뜨려. **내일신문**.
<https://www.naeil.com/news/read/334989>
- 정소영 (2019년 3월 19일). ‘안전사각지대’ 놓인 심리상담사.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8733099>
- 조수민, 김민주, 안은미, 이운경, 이정애, 정익중 (2021).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아동 행복 관련 기사분석. **한국아동복지학**, 70(2), 223-260.
- 조율, 권승현, 전수한 (2023년 11월 28일). 초교 ‘위 클래스’ 구축률 59%뿐... 정신질환 조기발견 기회 놓쳐[가난한 ‘금쪽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문화일보**.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3112801031021314001>
- 최정아 (2018). 법률 분석을 통한 상담전문직의 사회적 위상: 현황과 과제. **상담학연구**, 19(3), 341-366.
- 최정아 (2021). 심리상담 법제화 추진 동향 및 쟁점. **상담학연구**, 22(4), 11-27.

- 표명환 (2011).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체계적 고찰. *공법학연구*, 12(2), 81-104.
- 한국상담심리학회 (2024년 7월 16일). 윤리규정. https://krcpa.or.kr/member/sub01_5.asp
- 홍예지 (2016년 10월 18일). 우울·불안에 찾은 심리상담소.. 자격증 살펴보세요.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610121550211386>
- 홍인택 (2022년 11월 3일). 목격하거나 친구 잃은 아이도 트라우마 겪는데... 상담 교사는 절반 뿐.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0214480005165?did=GO>
- 황민아 (2019년 7월 5일). ‘상담심리사’와 ‘심리상담사’는 뭐가 다르지?...4,400여개 자격증 괜찮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KQX3F30>
- OECD (2024년 6월 30일). *Suicide rates*.
<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
- Shön, D.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Basic Books
- 원 고 접 수 일 : 2024. 08. 14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9. 23
게 재 결 정 일 : 2024. 10. 08

Topic Modeling Analysis of News Articles to Identify Unprofessional and Unethical Counseling Practices Due to the Absence of Laws Related to Psychological Counseling

Eun-Bin Kim

Ji Hyun Lee

Sung-Kyung Yoo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Student

Doctoral Student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the media portrays unprofessional and unethical counseling practices due to the absence of regulations amid the progression of psychological counseling legislation. Using the Korea Press Foundation's BiG KINDS, data from 51 media outlets reporting from 2009 to June 2024 were collected. After selection, 186 articles related to unprofessional, unethical counseling practices and legislation were analyzed us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for topic modeling. The analysis revealed eight key topics: unsafe counseling practices due to unscientific interventions, Insufficient deployment of professional counseling personnel and poor working conditions, Intrusion of improper counseling practices, clients' experience of substandard counseling, proliferation of unqualified certifications, lack of psychological counseling policy, sexual crimes exploiting unregulated spaces, and conflicts arising during legislation effort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legislation to mitigate the adverse impacts of unregulated practices on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Key words : Psychological counseling legislation, Counseling ethics, Unprofessional counseling, unethical counseling, topic modeling